
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
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중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,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중 현행 “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”에서 “1년 중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제18조의4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8조의4는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‘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’에서 ‘1년 중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
- 다만, 현행법 규정과 개정안은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의 근로관계가 조문 표현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관계가

명확해지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.

<안 제18조의4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8조의4(어선원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·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	제18조의4(어선원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1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<u>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</u>	제18조의4(어선원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1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<u>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</u>

- 그 밖에 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적용례는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부칙 조 제목을 ‘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’와 ‘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’로 각각 수정하는 등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